장애인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사례 연구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 및 학습자와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강진숙*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부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미디어 능력 촉진을 위한 과제와 지원방인들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미디어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들과 학습자들과의 반개방형 집단심층인터 뷰(FGI)를 실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터뷰의 초점은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목표, 장애요인, 교수법 그리고 활성화 방안 등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반개방형 인터뷰를 실시하여 설문기조를 유지하되 연구참여자들이 보다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연구에서 FGI를 통한 질적 연구를 하는 이유는 상호 토론이나 의견 개진을 통한 다양한인식과 경험들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뿐 아니라 학습자 모두를 선정한근거는 공통된 입장과 이견들을 비교함으로써 현실에 근접한 다각도의 인식 경험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장애인, 미디어교육, FGI, 심층인터뷰, 미디어능력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현재 미디어센터와 시민단체 미디어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교수법을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교육과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과거보다 더 높아졌지만, 장애인 을 능동적 주체이기보다는 보호 대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우려할 때, 비장애인의 시선이 아닌 장애인의 자신의 시선을 통해 미디어교육의 무제들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있다.

^{*} jskang1@cau.ac.kr. 심사위원님들의 세심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내의 장애인 미디어교육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 우선 학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8년 4월 25일 방송문화진흥회와 지역 MBC 6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대구MBC에서 개최한 "사례연구를 통한 장애인 미디어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윤영 태의 연구결과 발표와 함께 대구·마산·목포·울산·전주·춘천MBC 시청자미디 어센터를 비롯해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여러 전문가 단체의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세미나의 의의는 청각 지체 발달장애 등 유형에 따른 사례 연구를 통해 맞춤형 장애인 미디어교육모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다 자유롭게 미디어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미나의 기본 취지다. 이후 윤영태·안 영미·이진규(2007)는 2007년 12월, 부산맹학교 '소리누리 재미누리' 사례가 포함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례연구』(시청자미디어센터) 를 발가하였다.

이와 함께 그 이전의 연구로서 김향순(2006)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효율적 인 컴퓨터 교육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한국사회의 청각장애인 미디어교 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미디어교육 기반의 열악함과 청각장애 전문교사 및 양성기관의 부족을 들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인들보다 대체적 으로 사회진출이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교육 환경의 개선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미디액트의 '장애인문화공간'은 장애인 미디어 교육 가이드북인 『장애인, 미디어힘: 장애인 미디어교육 가이드북』(2006)을 발행했고, 현장의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구체 적인 실천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술발표와 미디어교육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미디어교육분야는 실질적인 현장의 미디어교육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화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특히 장애인미디어교육의 진행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지는 각각 어떠한 문제의식과 요구를 갖고 있는지 다각도의 분석이 요구된다. 주지했듯이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 의 견해를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독립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신체적·정 신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비장애인의 '안전한' 시선과 행위의 질서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 미디어교육 학습자들은 미디어교육과정에서 "어떠한 강의 에 흥미와 관심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강의 내용 자체가 '추상적, 비장애인적, 피상적 수준'이라고 비판의 일침을 가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서, 장애인 영상제를 개최하지만 장애인 영상제작자 역시 장애인 자체보 다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사랑, 우정, 결혼, 고통, 육아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 과 이미지를 생산해내는 경향도 종종 나타난다. 이것은 곧 장애인 미디어교육 이 참여자의 주체적 시선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애인의 경험과 문제들 에 가까이 가야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한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미디어능력 촉진을 위한 과제와 지워방 안들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미디어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들과 학습자들과의 반개방형 집단심층인터뷰 (FGI)를 실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터뷰의 초점은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목표, 장애요인, 교수법 그리고 활성화 방안 등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반개방 형 인터뷰를 실시하여 설문기조를 유지하되 연구참여자들이 보다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 FGI를 통한 질적 연구를 하는 이유는 상호 토론이나 의견 개진을 통한 다양한 인식과 경험들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뿐 아니라 학습자 모두를 선정한 근거는 공통된 입장과 이견들을 비교함으로써 현실에 근접한 다각도의 인식 경험들을 분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배경

1) 장애인 미디어교육 사례

미디어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역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은 기본 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을 포함한다. 물론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또 다른 구분이 가능하지만, 일단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견해는 장애인을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포함시키는 입장 이다. 본 연구 역시 장애인을 사회적 소외계층으로서 규정하는 데는 동의하지 만,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장애인을 보호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 가 있다. 장애인 역시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진 사회구성원일 뿐 아니라 미디어 를 이용하거나 제작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 다. 다만, 비장애인의 의사표현 방식이나 미디어 이용 및 제작 방식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교육의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기초해 이루어진다. 독일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두 가지 주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데, 그 하나가 장애의 경중을 막론하고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의 목표는 장애인 역시 자신의 능력 에 따라 적절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는 기본적으로 독일 사회의 사회통합적 과제와 연관된 것이다. 독일 사회 는 개인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주요한 사회적 과제 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는 미국과 유럽의 장애인 지원정책 패러다임이 기존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점차 경제적 자립생활을 위한 고용 서비스로 변화해 가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은 1919년에 세계 최초로 고용할당제를 실시하였고,

장애인 고용 정책과 기반들도 국가차워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활성 화되고 있다(이금진, 2000). 예컨대, 1919년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법령」 에 의거해 세계 최초로 장애인 1% 의무고용을 실시하였고, 이후 1923년 『중 증장애인고용법,으로 개정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을 해고로부터 보호하고, 노 동자 20인 이상 기업의 2%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고용법이 개정된 지 30년 후 「중증장애인고용법」 제정에 기반하여 기업들이 의무고용 을 회피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이후 1974년의 「중증장애인법」 제정과 수차례의 개정에 의해 의무고용률 이 노동자 16인 이상 민간 및 공공기관으로 상향되고, 고용부담금도 인상되었 으며, 장애인을 해고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장애인작업장(WfB)의 설치 등 종합적인 방안을 포함하게 되었다(이태훈, 2003).

2000년대에는 사회법전 제9권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넘어서 서 재활과 참여 부분이 보다 강화되었고, 본격적으로 장애어린이를 위한 특수 학교 및 복지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장애인들이 안정 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직접 장애학생 취업상담 업무를 실시하 게 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장애의 특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직업과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데 있다. 시각장애특수학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일반학 교 교육제도와 동일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시각장애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 과 희망에 따라 초등학교(그루트슐레) 졸업 시기부터 중등교육 전, 후기 단계의 다양한 학교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이태훈, 2003).

구체적으로 보면, 독일의 청소년 직업교육훈련은 크게 주 단위 교육부의 중등교육후기 단계의 직업학교들과 연방노동사회부의 연방노동청에서 관할 하는 직업훈련양성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독일의 장애청소년들은 연방노동 청 소관의 장애청소년직업훈련원(BBW)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2002년 기준으로 총 50개의 장애청소년직업훈련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다(이 태휴, 2003). 예컨대 시각장애특수학교와 후련원의 사례로서 요한 아우구스트 쪼이네 맹학교를 들 수 있다. 이 학교는 학습장애나 정신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3년 과정 의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베르프슐레는 독일 라디오방송국과 정보관련직 산학 연계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업 내 실습교육과 특수학교 내의 이론교육 을 병행시키는 대표적 이원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례로서 켐니츠 직업훈련원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100년의 오랜 전통을 가진 시각장 애청소년의 사회적·직업적 재활기관이다. 산학연대를 통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이원적 교육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특히 직업훈련 직종은 크게 3개 분야의 15개 훈련과정으로 구성되는데, 비즈니스 분야에는 3년 간의 사무행정과정과 사무정보과정이 있고, 2년 간의 워드프로세싱과정이 개설되 어 있다(BBW Chemnitz 홈페이지, 2003).

이러한 독일의 미디어교육을 위한 복지환경과 법제도적 측면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미디어교육 환경은 독일의 법제도처럼 역 사가 깊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2007년 5월 25일 제정된 후 2008년 2월에 일부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제1조) 을 교육목적으로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특수교육을 위해 관련 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은 상담, 가족, 치료,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학습보조기기, 통학 및 정보접근권 지원 등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한다"(제3조 3항)라는 항목이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기준으로서 총 11가지 장애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그것이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이들은 제33조에 준해 각급 학교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혜택 을 받거나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역시 공교육 과정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강조 하고 있지만, 정규 미디어교육 과정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는 미미한 게 사실이 다. 이러한 점에서 김기태·강진숙·심영섭·지성우(2007)의 『미디어교육 진흥 을 위한 법·제도 연구』는 미디어교육법의 필요성과 외국의 사례, 그리고 법체 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미디어교육 분야에 특화 된 맞춤형 법제 연구에 시사적이다.

또한 사회단체의 경우, 미디액트의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이나 장애인 복지 센터에서 운영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로는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특화시키거나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재원이 부족 하고, 현직 복지사들은 과도한 이중 업무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이와 달리 방송위원회에서 설립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재원의 측면에서는 상대적 으로 안정적인 상황이고,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사례집 발간을 통해 그 성과를 공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교육 센터와 상호 유기적 역할분담을 이루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실제 진행된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구체적인 사례1)를 살펴보면, 우선 2007 년 2월 2일~3월 23일에 개최된 경남DPI(경남장애인연맹)의 <지체장애인 미 디어교육 세상을 열어라 "미디어로 톡!!톡!!(talk!! talk!!)">은 총 16명의 학습 자와 6명의 교시를 중심으로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과정 은 총 13교시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교육주제는 <장애 속의 '나'를 열어보기>, <비판적 미디어 읽기>, <이미지로 보는 장애 이데올로기>와 같이 미디어 비평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시작된다. 그 다음의 흐름은 카메라의 기본구조와 작동법을 학습하거나 영상언어로 스토리텔링 실습을 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기획, 촬영, 인터뷰, 편집, 평가를 통해 최종 상영회 및 토론회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마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9월 17일~10월 29일에 개최한 <2007 시청자 미디어교육—장애인 미디어교육>이다. 5명의 교사와 23명의

¹⁾ 이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 시청자미디어센터, 2007, 23~91쪽.

학습자를 중심으로 개최된 이 교육은 장애인 자녀를 두 부들과 장애인 인권은 동 활동가들이 모여 장애아동 및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경남장애 인부모회가 중심이 되어 실시되었다. 이 단체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재가(在家) 장애인들을 찾아 그들의 환경과 실태를 알려내는 미디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앞의 경남DPI의 교육프로그램 과 동일하게 편성·실시되었다.

세 번째 사례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울산장애인부모회가 2007년 5월 30일~7월 20일까지 개최한 <달팽이 미디어교실>을 들 수 있다. 이 교육과 정은 지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부모 10명과 시각장애인 1명이 참여하였 고 교사 3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교사 3명이 매시마다 공동 으로 참여하여 진행하였고, 총 16차시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은 주로 실습과 체험 중심으로 편성되었는데, 다양한 뉴미디어의 활용과 구성 능력을 함양하 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디지털 카메라 촬영실습, 편집 실습, 인터넷 활용실습, 캠코더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실습, 영화 촬영과 인터넷 등록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2007년 9~10월에 15명의 학습자와 3명의 교사가 진행한 울산 미디어연대의 <동그라미 미디어교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은 캠코더를 이용한 촬영실습과 편집실습으로 구분해 각각 4, 5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지역 미디어센터들은 장애인 미디 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사와 장애인,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 연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미디어교육 과정에 서 제시하는 교육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목표와 쟁점

장애인 미디어교육이란 무엇이고, 그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이 물음은 하마디로 답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전국의 미디어센터들은 각기 지역

별 특수성에 기반하여 서로 상이한 장애인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서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와 학습자들 간의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배경과 프로그램들 의 차이로 인해 보편적인 정의와 목표를 규정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 도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실제 인식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우리 나라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목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사회적 소외계층으로서의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표현 과 소통을 위한 미디어 능력을 획득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미디어 능력은 독일의 미디어교육학자인 디터 바아케(Dieter Baacke)와 베른트 쇼름(Bernd Schorb)이 강조한 바 있듯이, 단순히 미디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인지적 능력이나 직능교육의 범주에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Baacke, 1996; Shorb, 2005). 대신 미디어 능력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능동 적으로 이용하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구성/제작할 수 있는 능력"(강진숙, 2005, 60쪽)으로서 다변화된 미디어환경에 타력적으로 적응하고 개척할 수 있는 이용자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장애인 미디어교육 역시 미디어와 사회변화에 대한 지식과 비평능력을 바탕으로 실무능력으로서 의 이용 및 제작 능력의 촉진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러면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목표는 어떠한 점에서 일반 미디어교육의 목표와 차별화될 수 있을까? 어떠한 목적 아래 장애인의 특수한 신체적 환경 적 차이를 고려한 미디어능력 교육을 실현해야 하는가? 이 점은 장애인 미디 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활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이다. 이러 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의 사례에서 제시한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교육 목적들을 살펴보면, 목표를 기준으로 한 유사성과 차이점 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경남 DPI의 경우, "영상제작활동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의 사회적 목소리를 확보하고 장애-비장애인 간의 상호이해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시청자미디어센터, 2007, 23쪽) 교육 목적이 있다. 두 번째로, 마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개최한 <2007 시청자 미디어교육-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장애인활동가들이 미디어를 통해 장애인 인권문제를 몸으

로 부딪히며 세상에 알려내는 데 기여"(시청자미디어센터, 2007, 41쪽)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세 번째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배경 및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시청자미디어센터, 2008, 58~59쪽). 즉, 자기표현과 의사결 정권 강화, 소통도구로서의 미디어의 일상화,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발언권 확보, 그리고 장애운동 및 교육에의 미디어 활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목적으로서 장애운동 및 교육에의 미디어활용,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자녀와의 소통도구 확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배경 및 목적은 "울산지역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상미디어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울산지역 장애인 미디어활동을 확대"(시청자미디어센터, 2007, 90쪽)하는 데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전개 과정에서 제시된 교육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미디어 활동을 통한 의사표현과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미디어를 통해 장애인 인권문 제를 스스로 경험하고 공론화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미디어교육을 통해 장애 인들의 가족 간 소통과 지역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와 학습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본 연구에 서는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목표쁜 아니라 현장에서 체험된 장애요인, 교육방법 그리고 대안점 등에 대해 질적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장애인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문제의 기조는 장애인 계층 관련 미디어교육의 목표, 미디어교육환경과 장애요인, 교육방법 그리고 제안점 등에 근거한다.

- - 연구문제 1: 참여자들은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주요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연구문제 2: 참여자들은 장애인 미디어교육환경과 장애요인을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가?
 - 연구문제 3: 참여자들은 어떠한 장애인 미디어교육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호 하고 있는가?
 - 연구문제 4: 참여자들은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가?

위의 연구문제와 연관하여 교사 인터뷰에서는 미디어교육 교수과정에서 경험한 바에 근거한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목표, 장애요인, 선호하는 미디어교육방법 그리고 개선점 등의 기조에 근거하여 반개방형 질문과 토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학습자들의 경우 실제 미디어교육 학습과정 에서의 개인적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문제의 흐름을 학습자의 경험적 차원으로 구체화하여 미디어교육 목표와 연관된 개인적 참여계기, 장애요인 과 연관된 미디어교육 참여 경험의 난점과 그 이유. 선호하는 미디어교육방법 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등의 기조를 바탕으로 반개방형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분석결과는 위의 연구문제에 대한 보다 명징한 접근을 위해 교사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피드백을 추출 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위의 연구문제에 근거해 이 연구는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와 수강생의 장애인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이 하 FGI) 방법을 선택하였다.2) 선정 근거는 한편으로, 장애인 미디어교육에

²⁾ 본 연구의 FGI 인터뷰 결과에 대한 녹취 자료들과 분석들은 다음 연구보고서를 참조 함. 김영순·강진숙·이영주(2008).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 연구: 커리큘

대한 국내 연구의 이론적 축적물이 미미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근거로 이론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 집단 참여를 통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본 연구의 주제와 연관된 장애인 미디어교육 관계자들의 관점과 비판, 평가와 제언, 그리고 타당한 질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FGI 질적 연구 방법에 근거하여 연구문제와 연관된 주제의 토론에 참여한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이 연구의 절차는 반개방형 질적 인터뷰 설문항목을 제시하고 진행을 조율하는 사회자 의 위치에서 가급적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2008년 7월 중에 이루어졌고, 장애인 미디어교육 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거 나 현재 진행 중인 교사 5명과 장애인 미디어교육 수강경험이 있는 학습자

< 표 1> 인터뷰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사례	성별	연령	활동분야	장애유형	종사기간 /교육 횟수
교 사 1	여	47	언론학 교수	비장애	4년
교 사 2	여	37	미디어교육	뇌병변장애	4년 4개월
교 사 3	여	30	장애우권익단체 미디어교 육 및 실무	비장애	2년 7개월
교 사 4	여	24	정신지체·발달장애 청소년 미디어교육	비장애	4년
교 사 5	남	31	미디어교육	시각장애	2년
학습자 6	여	49	장애우방송모니터단	비장애	5회
학습자 7	남	36	장애우방송모니터단	지체장애 (수동휠체어 사용)	10회
학습자 8	남	43	장애우방송모니터단	시각장애	15~20회
학습자 9	남	52	장애우방송모니터단	지체장애 (전동휠체어 사용)	3회
학습자 10	남	30	장애우방송모니터단	뇌병변장애 (클러치 사용)	1회

럼과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재단.

5명 등 총 10명의 미디어교육 교사-학습자들이 각각 서로 다른 자리에서 2회에 걸쳐 FGI에 참여하였다. 여기서 교사와 학습자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 면, 교사의 경우 '장애인미디어교육사'와 같이 특수계층에 대한 미디어교육교 사제도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장애인 미디 어교육 유경험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설정하였고, 학습자의 경우는 장애인법에 규정된 신체적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미디어교육과정에 참여한 자로서 자격을 제한하였다. 이 참여자들의 선정방법은 편의표집 혹은 여러 타인들의 추천을 거친 눈덩이 표집을 병행해 실시하였다.

4. 장애인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1)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목표 인식결과

장애인 미디어교육 참여자들의 미디어교육 목표에 대한 의견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분류된다. 즉, 장애 유형별로 미디어교육의 목표를 차별화해야 할 필요성, 장애인의 인권과 시청자주권 쟁취, 그리고 장애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이미지 리터러시 교육 등이 주요 항목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일부 교사들은 장애 유형별로 미디어교육의 목표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에는 한편으로, 장애유형이나 환경에 따라 미디어교육의 목표가 달라져야 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교사 5)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중복장애인, 특히 자폐나 약간 지적 소양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교육목 표를 서로 친밀감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기능케 하는 최종 목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는 장애유형별로 자기 표현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교사 4)이 있다. 예컨대 자폐증을 보이는 청소년 장애인의 경우, 디지털 카메라를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을 경우, 사용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벽을 친 세계로부

터 나올 수 있는 표현수단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의견과 유사한 맥락에서 학습자들 중 일부는 교육과정에 서 흥미와 관심을 끌었던 강의가 별로 없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강의들 이 추상적이고 비장애인적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고"(학습자 6), "드라마 분야 의 미디어교육과 영화감상을 주로 하였지만, 피상적 수준에 머무는 내용"(학 습자 10)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습자들은 장애인들에 고유 하고 적합한 미디어교육 과정과 교수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사들이 장애수준과 유형에 대해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시각장애인과 청각장 애인의 경우 서로 다른 입장과 정서 속에서 수강하는데, 이에 대한 강사의 조율과 고려가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 간의 이해의 간극이 발생"(학습자 6)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인권과 시청자주권 보호에 미디어교육의 목표를 두는 입장이다. 즉, 인권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송 비평교육이 필요하다 는 입장(교사 3)이다. 예컨대 방송의 장애인 차별사례를 찾아서 대응하는 방법, 장애인 관점과 인권의식에 기반해 방송을 시청하고 시각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미디어 제작교육보다는 이론과 비평교육에 중심을 두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해 학습자들은 공공기관의 미디어교육 진행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전체적인 미디어 분야를 훑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특화된 장애인에 대한 환경, 인권, 방송에 대한 교육은 미미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미디어 관련 교육에서 장애인미디어, 장애인인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 다.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책 중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을 함께 해서 무료로 상담해줄 수 있는 곳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재산이라든가 장애인은 전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부모님이 대리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장애인을 위한 의료권 문제라든가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디어로 스토 리를 구성해서 소개하는 방법도 좋고, 장애인 전문상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미디어교육에서) 대안에 대한 이야

기는 없어요. 보여지는 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지. 사회적인 자신의 위치나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구요. 인권교육과 관련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장애인이 소리를 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장애인의 목소리를 키워주기 위한 물리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제반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습자 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학습자는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 인상적인 분야로서 "'TV속 장애인권 모니터 교육'과 같은 TV방송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비평하는 것"(학습자 7)이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교사 와 학습자들의 인식은 교육목표에서 장애인 인권과 시청자주권 보호가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교육의 목표로서 장애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이미지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교사 1)이다.

사진이나 영상 그런 영상 이미지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불평등도 많고, 비장 애인 관점에서 찍혀진 것이거든요? … 경험상 장애인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것은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인권을 고양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하고, 장애인 관점에서의 인권이 무엇이냐는 큰 틀에서 고민해야지요. 장애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통할까 하는 제작의 문제, 장애인 관점에 서 영상과 이미지로 표현하는 능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기능 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 3~4년 장애인과 관련해서 고민했던 부분은 이미지 자체에 대한 교육과 비평, 미디어 리터러시를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프랑스에는 이미지 리터러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주얼 이미지. 이는 큰 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 장애인 관점에서의 미디어교육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교재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교사 1

이 의견 역시 앞의 경우처럼 장애인 인권 의식의 일확으로서 영상 미디어에

나타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불평등 사례와 비장애인적 관점에서 제작된 장애인들의 영상 이미지 문제 등을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의 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입장은 방송 영역에 제한시키지 않고 더 넓은 비주얼 이미지의 차원에서 이미지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학습자는 "방송의 장애인 이미지 묘사가 예전보다 편견은 덜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동정 및 시혜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학습자 7)라 고 문제를 제기했다.

2) 장애인 미디어교육 화경과 장애요인

미디어교육환경과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다른 어떤 범주보다도 중복 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우선적으로 제기된 장애요인은 미디어 인프라 구축과 보조인력의 문제이다. 그 주요 내용은 기자재의 대수가 한정되어 있어 다수가 동시에 활용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는 점(교사 3)에 있다.

이러한 인프라의 문제들은 장애인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미디어 교육 환경에서도 제기되어왔다. 그럼에도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경우 인프라 문제 가 더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불편함을 보조할 기구와 미디어 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경우 교사와 학습자 간, 그리고 학습자들 간의 균등한 소통과 공감이 불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래의 시각장애 학습자는 어려움을 자주 경험하였다.

평소 시사보도 쪽에 관심이 많아요 뉴스나 경제관련 쪽에 흥미가 있구요 강의 역시 그 쪽 분야의 교육을 받았어요. 관심도 있었고 재미있었습니다. 어려웠던 부분은 시각에 장애가 있으면 화면을 못보고 소리만 듣게 되므로, 이미지에 대한 교육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힘들고 짜증났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게 어떤 설명으 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한 테크닉이 필요했을 텐데 비장애인의 관점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 학습자뿐 아니라 장애 유형별 활동보조인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유형별로 차별화된 활동보조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화 통역이나 화면을 읽어주는 활동보조원이 부재하다 (교사 2)고 지적된다.

수화 통역이나 화면을 읽어주는 활동보조원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공감이라는 문제에서 활동 보조인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많았거든요. 또 하나는 활동보조원이 있더라도 영상 읽기에 대한 전문가적 시각이 없으면 읽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사 2

이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원들 대부분은 영상읽기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데서 문제를 찾고 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의견은 보조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 미비뿐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교사 3)이다.

보조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용을 해서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두 명 정도를 배치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어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을 인정하기보다는 여기서 나가는 인력성 인건비를 예산에 넣는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는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단체의 재량으로, 아니면 개인의 역량으로 넘기는 상황이 되요. "이런 것들을 왜 국가에서 줘야 하나"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자기 부담을 하거나 단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수화 통역을 예로 들면 한 시간에 7만 원이 들어요. 수화 통역 센터에서 정한 기준이거든요. 한 시간에 7만 원이면 보통 두 시간을 하게 되고 그럼 14만 원이에요. 교육을 10번 진행한다고 하면 14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 금액을 단체에서 지원을 할수 있느냐. 저희는 지원을 못해요. 그러다보면 수화 통역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전문인력의 재생산 구조 결여에 대한 의견이다. 모니터 교육을 통해 모니터 전문요원을 양성하지만, 지속성이 결여된 채 장애인 전문 인력이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학습자의 경우, 이미 3년차 모니터 수강자이면서도 보다 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관련 교사를 만나기가 어려웠다고 토론한다.

모니터 들어와서 한 달 동안 모니터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에 8회 정도 받아요. 모니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중심에서, 모니터 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으로 시사, 드라마, 보도를 볼 때 이론자체를 어느 정도 안 다음부터 모니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미디어 부분이 장애인 관련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수자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지식을 가진 분들도 부족합니다. 모니터를 3년차 하다 보니 필요한 부분들이 생각나고 알게 되었어요. — 학습자 8

이러한 문제점은 교사 역시 이미 인식하고 있는 바이다. 장애인 이미지의 왜곡과 문제되는 현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재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 모니터링, 아니 장애인 이미지에 대한 왜곡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고급인력 구조가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동시에 장애인 관련 단체들도 이런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 미디어교육 인력을 교육할 수 있고 재생산 할 수 있는 구조를, 그리고 구조적인 장치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사 1

특히 이러한 전문인력의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사회 정책결정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교사 1)이다. 즉, 장애인들의 방송주권과 시청자 주권을 향상시킬 수 있으려면 방송구조라

든가 방송통신위원회, MBC나 SBS의 시청자위원회 등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장애인들이 꼭 참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앞의 독일의 장애인 직업학교의 사례처럼 산학협력의 차원에서 방송사와 정보관련 직 산학연계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 유형과 단계별로 정교화된 커리큘럼과 교육내용이 부재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미디어교육 기관별로 서로 다른 교육 프로그 램과 교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차별화된 내용을 담은 체계화된 장애인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내용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것(교사 3)이다. 이와 관련 하여 한 학습자는 장애인의 정서와 장애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내 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던지고 있다.

장애인 유형은 많은데 강의는 한 가지 색깔인 것이 문제에요.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있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정서를 모르고 강의를 듣게 되면 이해에 갭이 생겨요. 방송접근권은 화면에서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해가 빠르지만, 타율적 으로 생활하시는 분은 방송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거죠. 미디어 교육을 학교에서 하면서, 장애우 연구소에서 습득한 부분을 학교에서 활용해보니, 드라마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현실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요. 즉, 드라마에서 긍정적이면 현실 역시 긍정적. 따라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방송지침(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 라에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에요.

— 학습자 6

또 다른 장애인 학습자 역시 교육내용 상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였다.

저는 교육과정 중 2005년/2006년 드라마 속 장애인권 모니터교육을 받았어요. 장애수준이나 유형의 구분 없이 따르지 않고 교육은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 년 TV속 장애인 강좌를 들을 수 있었는데, 강사진들의 교육방법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요. — 학습자 7

이러한 의견들은 학습자들이 비판하듯이 드라마에서 장애인을 '돌연변이' 등으로 표현하거나 과도하게 동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방송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PD와 방송제작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방송 용어를 사용할 경우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할 필요"(학습자 10)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미디어 속의 자신이 어떻게 묘사되고 왜곡되는지 명확히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장애인 전문인력의 재생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과 교육내용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선호하는 장애인 미디어교육방법

선호하는 장애인 미디어교육방법에 대한 의견들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압축된다. 즉, 뉴미디어와 영상을 이용한 교육방법, 찾아가는 미디어교육방법 그리고 장애유형별, 연령별 미디어교육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뉴미디어와 영상을 이용한 교육방법을 선호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즉, 한편으로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텍스트와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제작하고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학습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교사 3)이 제시되었다.

영상을 보여주고 얘기하면서 듣고 말하는 것들이 종합되지 않으면 수업이 지루하고 이해력이 떨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뉴 미디어, 특히 예전에 인터넷이 안 되던 시기와는 다르게 인터넷을 통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자료를 올리고 보여주고, 영상 같은 것을 보여주고 만들어주고, 바로 내가 한 시간 안에 찍고 만들어서 나오는 과정까지 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것이거든요. — 교사 3

이처럼 영상 교육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장애인 학습자들의 좋은 반응과 토론의 활성화를 꾀할 뿐 아니라 인식과 고민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교육 경험에 기반한 의견(교사 2)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제가 영상을 사용하는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반응이 의외로 좋아요. 영상 속에 나타난 관점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항상 토론을 하거든요. 저도 많이 배우게 되고요, 어차피 영상은 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자신들이 그 영상에 담겼을 때 정말로 올바른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 교사 2

이에 대해 한 학습자는 "방송모니터 교육과정에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대화를 나눈 경험을 소중히 여기면서 대화 및 토론을 중심으로 한 영상 모니터 교육이 중요하다"(학습자 7)라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나아가 다른 학습자 (6)는 모니터링의 결과를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 공유했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실행방법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방법의 필요성이다. 즉, 단지 미디어교육기관 하나를 설립해서 장애인들을 불러 오는 게 아닌 다양한 접근 방법이모색되어야 한다는 입장(교사 1)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현실체험을 유도하는 교육방법이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장애인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소규모의 토론 모임이나 커리큘럼에 기반하여 소모임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자의경우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사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심층적 모니터 교육을실시해야 한다"(학습자 9)는 의견이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유형별, 연령별 미디어교육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테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방법과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방법은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교사 3)이

다. 예컨대 초등학생들에게는 직접 만져보고 제작하는 청소년 미디어교육 모니터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아래의 학습자 역시 이 점에 동의하는 입장인데, 실례로서 시각장애인들은 소리 교육을 강화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신체 보다는 다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육방법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 컴퓨터로 치거나 손으로 써서 자료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세분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료화 되는 것은 기본바탕으로 두고, 토론식으로 하는 것을 활성화 하고 즉 장애에 대한 차이를 세분화 하여 교육 커리큘럼에 차별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소리를 통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몸을 사용하는 자료정리보다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육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에 교재를 만든다든가, 다른 장애인 들을 교육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통합적인 교육이 있는 반면, 세분화 특성화시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습자 10

4)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위한 개선 및 제안점

향후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위한 개선 및 제안점은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 었다. 우선, 교사와 학습자 양 측면에서 가장 질적으로 우수하고 체계적인 미디어교육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입장(교사 3)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뉴미디어 기자재는 학교에서 저렴하고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지원 받기보다 차라리 강사모임이나 집단에서 자율적으로 구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는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장애인 미디어교육 연구의 활성화를 제안 하는 의견이다. 즉,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일단 장애인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들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교사 2)이다. 정작 "장애인 교육환경에서는 장애인들이 별로 없는 현실"(교사 2)에서 장애인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양하고, 장애인들이 자기 결정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구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학습자 역시 "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직업화 그리고 장애인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학습자 10)을 피력하였다.

세 번째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일상적 활용을 위한 지속적 피드백 시스 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교사 5)이다. 즉, 교육을 받고 난 후 가정에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학교-가정 간의 지속적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나아가 특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전환교육이 고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학습자는 "장애인 인권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미디어 스토리 구성 프로그램"(학습자 6)을 제안하였다. 즉, 미디어 교육에서 장애인 미디어나 장 애인 인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한 무료 상담소, 그리고 장애인의 재산권 및 의료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미디어로 스토리를 구성 하여 인권문제를 소개하거나 장애인의 목소리를 키워줄 수 있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미디어교육 전문교사 양성 시스템과 안정적 지위 확보 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부분에서는 직접 강사 직업을 가진 교사들의 의견들이 활발히 제시되었는데, 그중에 눈여겨볼 의견이 있다.

저는 전문가이면서 비장애인 프리랜서 교육가에요 제 입장에서는 "저를 전문가 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 저와 같은 선생님들은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기관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찔리는 부분이 많지요. 저는 신방과를 나왔고 미디어를 전공했지만 장애인 전공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 저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 대 1로 장애인들과 맨몸으로 알아가면서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찾아가야만 가능한 화경은 매우 소모적이죠. - 교사 4

위의 연구자(교사 4)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미디어교육 강사로서의 애환 과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즉. 전문교사의 부재를 비판하기 전에 전문적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안정된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교사 역시 공감하면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애인 미디어교육 전문 기관의 설립과 방송모니터링 커리큘럼의 개발"(교사 1)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들의 안정된 교육 준비와 재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도 요구된다.

이에 대해 학습자들 역시 유사한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특히 장애인 전문 미디어 교육 기관의 설립과 증설을 주장하였다. 예컨대. <바투> 같은 장애인 미디어센터를 증설하여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영상제작소의 활성 화를 꾀하는 방법을 제안(학습자 7)하거나 장애인 전문 교육교사를 전문직업 인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학습자 9)을 강조하는 입장들이 그것 이다.

5) 소결

이상과 같이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들의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목표, 미디 어교육 환경과 장애요인, 교육방법, 그리고 제안점 등을 중심으로 한 FGI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들은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목표에 대해 다양 한 의견을 표현했는데,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장애인의 이미지 개선, 인권

회복, 소통의 수단 획득,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등으로 압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이미지 리터러시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장애인의 인권과 시청자 주권 보호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 장애유형별로 소통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장애유형별로 미디어교육의 목표를 차별화하여 실제 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요인으로 서 학습자의 경우, 전체적인 미디어 분야를 배웠지만, 장애인에 대한 환경, 인권, 방송에 대한 부분은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모니터에 대한 기본 상식으로서 시사, 드라마, 보도에 대한 이론 교육이 진행되었지만, 장애인 관련 미디어 부분에 대한 교육은 미미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에서 특히 장애인의 인권 보호의 측면은 교육목표로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들은 장애인 미디어교육환경과 장애요 인에 대해 전문인력, 커리큘럼 및 교육내용, 인프라, 미디어 기기 등의 문제들 을 제기하였다. 즉, 장애인 전문인력의 재생산 구조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을 문제시 하며 장애 유형 및 수준별로 정교화된 커리큘럼과 교육내용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다음으로 열악한 수준의 미디어 인프라와 장치들이 미디어교육에 장애요인이 되며, 나아가 제한된 미디어 기자재의 문제와 장애 유형별 활동보조인력이 극히 부족하다는 점이 미디어교육환경의 장애요인으 로서 거론되었다.

세 번째로 선호하는 장애인미디어교육방법에 대한 의견들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관점의 교육방법을 추구해야 하다는 점이다. 즉, 장애 유형별 차이와 정서를 고려하는 교사의 교수법과 교육방법을 모색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유형별, 연령별 미디어교육방법과 경험 정도에 따른 단계별 교육방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피력되었고, 그 밖에도 찾아가는 미디어교육방법과 영상매체의 활용을 통한 시각적 교육방 법, 그리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교육방법 등이 제안되었다. 학습자의 입장 역시 이와 유사하다. 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참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장애 수준과 유형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정서를 모르고 강의를 듣게 되면 이해의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방송 가이드라인 제작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 비하 용어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 밖에도 일부 강사가 4년 간 동일한 강의원고와 영상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위한 제안점은 각 교사들의 활동기반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입장들이 제기되었다. 그 한 예로서 장애인 미디어교 육 전문교사 양성 시스템과 안정적 지위 확보 방안이 가장 주요하게 언급되었 다. 예컨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애인 미디어교육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장애 인 전문교시를 육성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처우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미디어교육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일상적 활용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 장 안팎을 연계하는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안되었 다. 학습자의 경우, 장애인 인권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미디어 스토리 구성 프로그램, 장애인 전문 미디어 교육 기관 설립(<바투> 같은 장애인 영상 제작소 증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및 영상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프로젝트 실시, 장애인 전문 교육교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하여 지원 확대, 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직업화, 그리고 장애인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할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5. 결론

이상의 의견들에서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된다. 우선,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었지만, 핵심적인 의견은 장애 유형별로 미디어교육의 목표를 세분화하여 미디어교육 수행을 위한 미디어교육 육방법과 커리큘럼의 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요컨대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인권과 시청자주권을 지켜낼 수 있는 장애인 미디어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한다.

두 번째로,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장애요인은 일반 미디어교육 환경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할 사항은 장애 유형별 활동보조인력의 확대, 장애인을 위한 보조장치와 인프라 구축, 장애 유형별·수준별 차이를 고려한 커리큘럼의 개발 등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보조인력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와 자막의 부재 등은 현재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세 번째로, 장애인 미디어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직접적인 미디어 체험을 통해 미디어 환경과 사회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특히 인터넷과 UCC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하여 장애인 학습자들의 흥미와 즐거움을 촉발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의 개인적·사회적환경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미디어교육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방법은 장애유형별, 연령별 미디어 교수법의 개발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방안모색이요구된다. 또한 장애인 미디어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 일반론이나 피상적 수준의 미디어 감상이 아니라 보다 세분화되고 특화된 교육 분야가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시사보도, 뉴스, 경제 관련 미디어 교육이나독립영화 분석 등은 장애인 미디어 교육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분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주도와 정부의 후원 이래 장애인 미디어교육 전문 교사 양성 시스템과 교사의 안정적 지위 확보가 요구된다. 현재 한국언론재단 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는 미디어교육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미디어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준비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여 장애인 전문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적절한 지위보 장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워 프로젝트와 연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하다

이 연구는 주로 교사와 학습자와의 질적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시각 외에 다른 시각을 고려하지 못하는 제한점 을 지닌다. 차후의 후속 연구에서는 미디어 센터 운영자와 정부 관계자, 그리 고 학계의 다양한 입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 고자 한다. 이 연구의 기본 의의는 장애인 미디어교육에 대한 기존의 성과에 덧붙여 미디어 교육 연구의 다변화를 위한 이론적 자료이자 장애인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실용적 자료로서 활용하는 데 있다.

▮참고문헌

- 강진숙 (2005). 미디어 능력의 개념과 촉진 사례 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52 \sim 77$
- 김기태·강진숙·심영섭·지성우 (2007). 『미디어교육 진혼을 위한 법·제도 연구』. 한국언론재단.
- 김영순·강진숙·이영주 (2008).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 연구: 커리큘 럼과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재단.
- 김향수 (2005). 청각장애인을 위한 효율적인 컴퓨터 교육에 관한 연구. 목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혜성 (2005). 『미디어교육학』.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워.
- 방송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2007a). 『2007 부산·울산·경남 미디어교육 사례집』. ____ (2007b). 『여성장애인 미디어교육: "시시콜콜, 유쾌한 수다방"』.
- (2008). 『2007 방송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 백서』.
- 유영태·아영미·이진규 (2007).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례연구』. 방송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 안정임·전경란 (1999). 『미디어교육의 이해』, 서울: 한나래.
- 이금진 (2000). 장애인고용정책비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이정춘 (2004). 『미디어교육론』. 서울: 집문당.

이태훈 (2003). 독일 시각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 전달체계. 『시각장애교육연구』, 제19권 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정현선 (2007). 『미디어교육과 비판적 리터러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Baacke, D. (1996). Medienkompetenz als Netzwerk. In: Medien Praktisch. Zeitschrift für Medienpädagogik. 2/96, H. 78, 20 Jg. 4~10.

Berufsbildungswerk fur Blind und Sehbeninderte Chemnitz Gmbh (2003). www.bbw-cheminitz.de/

Hassenbach A. (2004). Barrierefreiheit von Webangeboten am Beispiel der Stadtbibliothek Bremen, In webMen Internet Bremen.

http://www.mediact.org/

http://www.mediamentor.org/

Radtke A. & Charlier M. (2006), Barrierefreies Webdesign, München: Addison-Wesley.

Schorb, B. (2005). Medienkompetenz. In J. Hüther, B. Schorb & C. Brehm-Klotz (Hg.), *Grundbegriffe: Medienpädagogik* (pp. 257~264), München: kopaed.

(투고일자: 2009.02.26, 수정일자: 2009.04.06, 게재확정일자: 2009.04.15)

A Recognition Case Study on Media Education for the Disabled People

With Focuses on Focal Interview with Media Education Teachers and Learners

Jin-Suk Ka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cognition cases on media education for disabled people, discovering tasks to improve media competence of disabled people and to find adequate supporting program. Semi-open type focus group interview is conducted with participation from media education teachers having teaching experience over disabled people. Main goal for this interview is to locate the aim, causes of disability, education methodology and revitalizing method for the media education for disabled people. Specifically, semi open type focus interview is selected to form questionnaires while catalyzing free discussion between participants. The intention of selecting quantitative research by FGI is to derive various recognition and experiences of participants by free discussions and opinion sharing. In addition, both teachers and learners are selected to find differentiated and common views towards the theme, realistically analyzing recognition experience from various angles.

Key words: Disabled People, Media Education, FGI, Focal Interview, Media Competence